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허용 등 >  
■ 박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18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앱 마켓에서의 주요 결제방식 유형 개관 .....            | 2  |
| 2.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허용 .....       | 4  |
| 3.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결제방식 안내의 제한 방지 .. | 13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훈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3. 13.

다. 회부연월일 : 2025. 3. 1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사실상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결제방식 이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다른 결제방식의 이용과 관련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제3항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 1. 앱 마켓에서의 주요 결제방식 유형 개관

- 앱 결제 방식의 주요 유형은 ① 앱 마켓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인앱결제(In-app purchase, IAP)’, ② 앱개발사가 지정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앱내에서 거래하는 ‘인앱 3자결제’ 및 ③ 앱개발사가 지정한 외부링크를 통해 앱 밖으로 이동하여 거래하는 ‘외부링크를 통한 결제’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앱 결제 방식의 주요 유형 비교>

| 구분         | 인앱결제                          | 인앱 3자결제                        | 외부링크를 통한 결제                      |
|------------|-------------------------------|--------------------------------|----------------------------------|
| 개념         | 앱마켓 운영사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 | 앱개발사가 지정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앱내에서 거래 | 앱개발사가 지정한 외부링크를 통해 앱 밖으로 이동하여 거래 |
| 거래발생 플랫폼   | 앱마켓                           | 앱마켓                            | 외부 플랫폼 (다른 앱, 웹사이트 등)            |
| 결제시스템 운영주체 | 앱마켓                           | 앱개발사 또는 앱개발사 지정업체              | 앱개발사 또는 앱개발사 지정업체                |
| 거래수수료      | 최대 30%                        | 최대 27%                         | 앱 개발사 및 결제 대행업체 개별 협의            |
| 거래데이터      | 앱마켓 독점                        | 앱마켓, 앱개발사 공유                   | 앱개발사 독점                          |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앱결제의 개념 및 유형과 해외 주요국가 규제 동향」, 2022. 6. 13.

- 이 중 인앱결제 방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sup>1)</sup>(구글, 애플 등)가 거래데이터를 독점하게 되고 시장 영향력을 활용하여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앱 마켓에 진입하는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았음.
- 다양한 결제 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가 도입된 이후 앱 마켓사업자는 인앱 3자결제를 허용하고 있음. 인앱 3자결제는 앱 마켓사업자 이외의 제3자가 구축한 결제시스템을 활용하므로, 인앱결제에 비해서는 낮은 수수료가 책정이 될 수 있지만, 구글은 인앱결제와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수료율(26%)을 적용하여 다른 추가비용<sup>2)</sup>을 고려할 때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방식을 선택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 외부링크를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은 애플의 경우 허용한 바 있으나, 애플은 해당 방식을 활용한 결제에 대해서도 기존 인앱결제와 유사한 수수료율(27%)을 부과하는<sup>3)</sup> 경우가 있어, 인앱결제와 수수료율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임.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앱 마켓사업자”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인앱결제에 비해 약간 수수료가 더 낮지만, 인앱 3자결제 방식은 개발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고 결제대행 업체(PG), 카드사 등에도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하는 구조이므로 실질에 있어 인앱결제에 비해 불리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3) 이데일리, “애플의 백기투항?...‘아웃링크’ 결제 허용했으나 새 수수료 도입”, 2024. 8. 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66166638985680&mediaCodeNo=257>

## 2.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허용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결제방식 이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제방식과 관련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은 공정하고 타당한 수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제3항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 현행                                                     | 개정안                                                                                                                                                                                                                                                                                 |
|--------------------------------------------------------|-------------------------------------------------------------------------------------------------------------------------------------------------------------------------------------------------------------------------------------------------------------------------------------|
|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① (생략)<br><u>&lt;신설&gt;</u> |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br>② <u>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 마켓”이라 한다)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해당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u><br>1. <u>앱 마켓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앱 마</u> |

|                                                                                                                                                                                                                                |                                                                                                                                                                                                                                                                                              |
|--------------------------------------------------------------------------------------------------------------------------------------------------------------------------------------------------------------------------------|----------------------------------------------------------------------------------------------------------------------------------------------------------------------------------------------------------------------------------------------------------------------------------------------|
| <p>&lt;신 설&gt;</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u>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 마켓”이라 한다)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라 한다)의</u>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 <p><u>켓에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방식</u></p> <p>2. 제1호 이외에 웹 탐색기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방식</p> <p>③ 앱 마켓사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제방식과 관련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은 공정하고 타당한 수준이어야 한다.</p> <p>④ -----<br/>-----<u>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u>-----<br/>-----<br/>-----<br/>-----<br/>-----.</p> |
|--------------------------------------------------------------------------------------------------------------------------------------------------------------------------------------------------------------------------------|----------------------------------------------------------------------------------------------------------------------------------------------------------------------------------------------------------------------------------------------------------------------------------------------|

☐ 검토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은 앱 마켓사업자가 ①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제9호), ②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제10호), ③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제11호)를 금지하고 있음.<sup>4)</sup>

- 해당 법률의 조항은 독과점적 영향력을 지닌 앱 마켓사업자가 앱 내의 특정 결제방식 만을 허용하는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2021. 9. 14.부터 시행된 내용임.

- 해당 규정을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2022년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10월 6일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 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계획이라는 발표<sup>5)</sup>한 바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 혹은 인앱결제 시스템 내

---

4)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5)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방통위, 구글·애플의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및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추진’, 2023. 10. 6.

제3자 결제방식만을 허용하고 외부링크를 통한 웹에서의 결제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현행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sup>6)</sup>.

- 구글·애플의 경우 자사 결제 시스템 외에도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고 있지만, 제3자 결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여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큰 혜택이 없는 경우가 있음.

- 또한, 구글은 앱 내에서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결제 링크(아웃링크)를 활용하여 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여 현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앱마켓사업자들은 사실상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여전히 실시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음.

○ 이처럼 현행법에 따라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지만(제50조제1항제9호)<sup>7)</sup>,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앱마켓사업자가 제3자 결제를 허용하지 않거나 외부 링크 등

---

6) 2022. 6. 26., 디지털투데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실효성 논란 왜?...”입법 보완 필요”,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814>

2024. 8. 16., “애플·구글, 한국서 앱마켓 갑질 여전...법·제도 반드시 보완해야”, <https://www.mk.co.kr/news/it/11094609>

7)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3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을 통한 결제수단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동 개정안에 앱 마켓사업자가 인앱결제 외의 결제수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분명히 명시됨으로써, 이러한 결제수단이 허용된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기존 앱 마켓사업자(예: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의 주요 수익이 결제 수수료인 관계로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수단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개정안에 따라 다른 결제수단도 허용하는 것이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로 명확하게 되므로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음.
- 다만, 현행법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현행법에 따라서도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의 개정 실익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또한, 개정안 제22조의9제3항 신설 내용은 앱 마켓 사업자가 결제 방식과 관련하여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공정하고 타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제한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여전히 인앱 결제 외 결제 방식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여 사실상 인앱결제를 유도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결제 방식의 실질적인 도입을 촉진하고 모바일 콘텐츠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해당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히, 소규모 모바일콘텐츠 개발사나 스타트업 업체의 경우에는 높은 앱 마켓 결제 수수료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사의 수익 구조 개선으로 모바일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해당 조항은 앱 마켓사업자의 수수료가 ‘공정하고 타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는데, 어떤 수수료 비율이 공정하고 타당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는 과태료 등의 의무이행수단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앱마켓 경쟁 제한으로 사실상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있어 규정 정비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보안을 위한 필수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보안문제<sup>8)</sup>를 예방할 필요가 있

---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예외 없이 결제 방식을 허용하도록 할 경우 스미싱 등 보안 문제가 발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다는 입장이며, 공정하고 타당한 수준의 결제수수료에 대해서는 결제 방식의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결제수수료의 수준을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령 체계상 부적절하며,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관련 업계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개정안 제22조의9제2항은 ‘모든’ 앱 마켓사업자가 ‘예외 없이’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전 규제 조항으로, 기존 법 제50조제1항제9호가 앱 마켓사업자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만을 규제하는 것에 비해 과도하거나 중복되는 규제이며, 앱 마켓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이 공정하고 타당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개정안 제22조의9제3항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가격에 대한 정부의 직접 규제는 사업자의 영업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하고 타당한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 위반 가능성 및 제재 여부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동 개정안의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공정거래법」과 규율 범위가 중복되며, 일반적인 작위 의무의 부과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구체적으로 거래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앱 마켓사업자에게 다양한 결제방식 제공 의무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율을 지나치게 제약하며 합리적인 사

유(보안, 정보보호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최소 규제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입장임.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행법 상 앱마켓사업자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규제에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며, 기간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를 인가에서 신고로 개정하는 등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제 수수료의 수준을 법률상 규정으로 신설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하였음.

- 2020년 12월 이동통신사 간의 요금 경쟁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통신 요금 인가제(요금제 출시 및 가격 인상 시 정부 허가 필요)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도입되었음. 유보신고제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만 하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함.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애플은 현행 법령에 특정 결제방식의 강제가 금지되어 있고, 아웃링크를 포함한 외부 결제수단은 앱마켓사업자의 보호와 혜택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용자가 프라이버시 침해 등 여러 위험과 불편한 상황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수수료 수준은 단순한 결제대행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앱마켓 운영을 통해서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며 서비스 가격에 대한 직접 통제는 부적절하고, 미국무역대표부의 불공정 우려<sup>9)</sup>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동 개정안의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명시하는 부분은 앱 마켓사업자가 인앱결제 외의 결제수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분명히 명시됨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가능하여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하나, 현행 법 상 이미 특정 결제방식 강요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는 의견과 외부결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 규제 강화로 인한 예측하는 못하는 부작용 등을 감안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임.

동 개정안의 수수료를 공정하고 타당한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앱 마켓 사업자가 여전히 인앱결제 외 외부결제 방식 등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타당한 면이 있으나, 어떤 수수료 비율이 공정하고 타당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결제수수료의 수준을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령 체계상 부적절하며,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해관계자의 견해 등을 감안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임.

---

9)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2025년 3월 31일 발표한 ‘2025 해외무역장벽에 대한 국가 교역 평가 보고서(202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에서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규제 대상에 미국 기업이 포함되는 반면 다수의 한국기업 및 타국 기업은 제외됨을 우려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3. 앱마켓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결제방식 안내의 제한 방지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다른 결제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링크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결제방식의 안내에 필요한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 현행                                                                                                                                                                                            | 개정안                                                                                                                    |
|-----------------------------------------------------------------------------------------------------------------------------------------------------------------------------------------------|------------------------------------------------------------------------------------------------------------------------|
|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0조(금지행위) ① -----<br>-----제12호-----<br>-----<br>-----<br>-----<br>-----<br>-----<br>-----<br>-----<br>-----<br>-----. |
| 1. ~ 8. (생략)                                                                                                                                                                                  | 1. ~ 8. (현행과 같음)                                                                                                       |
| 9.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                                                                                                           | 9. -----<br>-----<br>-----<br>-----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제22조의9제2                                                       |

|                   |                                                                                           |
|-------------------|-------------------------------------------------------------------------------------------|
| <u>하는 행위</u>      | <u>항제2호에 따른 결제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u>                                                       |
| 10. · 11. (생략)    | 10. · 11.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u>12.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제22조의9 제2항제2호에 따른 결제방식의 안내에 필요한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u> |
| ② · ③ (생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 개정 부분은 앱마켓사업자에게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앞에서 논의된 동 개정안의 제22조의9제2항 부분이 개정되는 경우 금지행위 내용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임.
- 동 개정안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부분은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인앱결제 외의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행위인 안티스티어링<sup>10)</sup>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모바일콘텐츠 이용자의 결제 방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앱마켓

10) 앱마켓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 외의 결제수단(외부결제 등)을 사용자에게 안내, 유도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의 결제 시스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앱 마켓사업자는 자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인앱결제로 결제방식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하고 있는 다양한 결제방식에 대한 안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해당 규정의 신설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현행 규정에 따라서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 행위에 해당하나, 개정안 제22조9제2항제2호에 따른 ‘인앱결제 이외에 웹 탐색기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법 해석에 따라 현행 규정에 비해서 금지 행위로 규정되는 결제방식의 제한·금지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존 법령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와 웹 탐색기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제한·금지하는 행위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법 취지와 달리 규제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앱 마켓사업자의 결제방식 제한 행위 등 금지 비교>

| 구분    | 기존 법률                  | 동 개정안                                                    |
|-------|------------------------|----------------------------------------------------------|
| 규제 대상 | 앱 마켓사업자                | 앱 마켓사업자                                                  |
| 사업자   |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
| 규제 내용 | ○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모든 행위 | ○ 웹 탐색기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 |

- 구체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모든 행위’는 외부 결제 방식을 형식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예: 높은 수수료 등)를 취하여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동 개정안의 제한 행위 부분은 웹 탐색기 등 외부 결제방식에 대해서 직접 규제하는 경우로 한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개정안 제 50조제1항제9호가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제50조제1항제9호)는 앱 마켓사업자가 외부결제를 직접 제한·금지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외부결제 자체는 허용하더라도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등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도 규제하고 있어 동 개정안보다 규율범위가 넓으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다만,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결제 금지를 명확하게 직접 규율하는 개정안 내용을 별도 신설하되, 앱마켓사업자가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보안,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요건으로 추가하며, 새로운 결제방식이 개발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외부 결제방식의 수단을 웹 탐색기 등으로 한정하는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앱마켓사업자의 안티스티어링 행위를 금지하는 동 개정안 제50조제1항12호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법 조문의 명확성·구체성 등을 높이기 위해 조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동 개정안의 제22조의9제2항 개정 부분으로 앱마켓사업자에게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의 개정이 필요하고 앱마켓사업자의 안티스티어링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므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개정안의 금지 행위 개정 내용이 현행 규정에 비해 규제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과, 안티스티어링 행위 금지 조항도 명확성·구체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소관 부처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부분임.

|              |
|--------------|
| 문 의 처        |
| 02)6788-5225 |